

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2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3. 2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폐지이유

2009.11.28. 상위법령(농지법44조,45조,46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)이 폐지됨에 따라 이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10- 호(2010. 1. 22 ~ 2010. 2. 10)
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농지법 (법률일부개정 제 9721호 2009.11.28시행)

다. 예산조치 :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4. 본 문 : 덧붙임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